

제24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4. 10.

임실군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각종 재해 및 사고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전 및 물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자의 범위 (안 제2조)
- 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안 제3조)
 - 명절, 연말 위문금품, 교육관련 경비, 월동대책비, 생계비 및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 다.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신청을 돕기 위한 복지이장 위촉(안 제4조)
- 라. 지원신청 및 조사, 대상자 결정(안 제5조~안 제6조)
- 마. 지원의 중지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안 제7조~안 제8조)
- 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준용규정과 시행규칙 정함 (안 제9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나. 예산조치 : 협의 필요

다. 협의 등 : 집행부 의견조회

마. 심사예고 : 생략

라. 기타

1) 조례안 : 붙임

2) 관계법령 발췌문 : 참고자료

3) 비용추계서 : 생략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및 물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임실군수(다음부터"군수"라고 한다)는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저소득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6.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 아동 등
7.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군수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10.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행려자 및 그 밖에 지역 인적안정망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절, 연말 위문금품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월동 대책비 지원
4. 생계비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5. 긴급지원 및 재해구호비 지원
6.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
7. 지역 인적안정망 확보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복지이장 위촉)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발굴 및 신청을 돕기 위하여

「임실군 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이장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복지이장으로 위촉해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조사)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복지이장 등 관계인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실태, 위기상황 등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신청에 의한 추천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천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며 긴급지원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지원 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조사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사유를 신청인과 복지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역 인적안정망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의 경우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경우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임실군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복지이장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임실군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이장으로 임명 된 경우에는 복지이장으로 위촉한 것으로 본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의 협조,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로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

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